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50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2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¹⁾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
- 14개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855억원 증액 하였으며
-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663억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

1)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수입계획 변경

-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을 기금 수입으로 신규 편성(증 1,810백만원)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증액(증 51백만원)하고자 함

※ 양성평등 가족 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5년부터 매년 다둥이 행복카드 연단위 적립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 예정

나.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

- 변경된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을 증액(1,745백만원)하고,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35백만원,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5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구분(항·목)	'25년(A) 당초 계획	'25년(B) 1차 변경	'25년(C) 2차 변경	증 감 (C-A)	(C-A)*100/A
합 계	2,088,024	2,088,024	3,949,226	1,861,202	89.1
216 이자수입	13,555	13,555	13,555	-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3,306	13,306	13,306	-	-
216-03 기타이자수입	249	249	249	-	-
223 보조금반환수입	30,259	30,259	30,259	-	-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0,259	30,259	30,259	-	-
224 기타수입	-	-	1,809,788	1,809,788	
224-07 그외수입	-	-	1,809,788	1,809,788	
714 예치금 회수	976,770	976,770	1,028,184	51,414	5.3
714-01 예치금회수	976,770	976,770	1,028,184	51,414	5.3
721 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	-
722 예탁금및예수금	967,440	967,440	967,440	-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967,440	967,440	967,440	-	-

○ 지출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정책·단위·세부사업)	'25년(A) 당초 계획	'25년(B) 1차 변경	'25년(C) 2차 변경	증 감 (C-A)	
				(C-A)	(C-A)*100/A
합 계	2,088,024	2,088,024	3,949,226	1,861,202	89.1
성평등 증진	1,117,000	1,148,000	1,233,000	116,000	10.4
여성 권익증진 사업 (양성평등 가족 기금)	1,117,000	1,148,000	1,233,000	116,000	10.4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	677,000	658,000	658,000	△19,000	△2.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0,000	60,000	60,000	-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100,000	100,000	100,000	-	-
이동, 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50,000	50,000	50,000	-	-
이동청소년 온라인 안심 지킴이 운영	50,000	50,000	50,000	-	-
양육행복도시 성과평가	100,000	100,000	100,000	-	-
아이사랑홈 인증 사업	80,000	80,000	80,000	-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재개장	-	50,000	50,000	50,000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	-	35,000	35,000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	-	50,000	50,000	
일반예산(재무활동)	958,024	927,024	2,703,226	1,745,202	182.2
보전지출(양성평등 가족 기금)	958,024	927,024	2,703,226	1,745,202	182.2
여유자금예치	958,024	927,024	2,703,226	1,745,202	182.2
행정운영경비 (양성평등 가족 기금)	13,000	13,000	13,000	-	-
기본경비(양성평등 가족 기금)	13,000	13,000	13,000	-	-
기금관리비	13,000	13,000	13,000	-	-

3. 검토의견²⁾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가 5,1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수입**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을 신규 편성(18억 900만원)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예치금**을 17억 4,500만원 증액하고, **성평등증진**중 신규 세부사업에 8,500만원을³⁾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⁴⁾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에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 및 기타수입을 예치하려는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9억 5,800만원)보다 182.2%, 17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그러나 또 다른 ②정책사업인 **성평등증진**은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하려는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11억 1,700만원)보다 10.4%, 1억 1,600만원 증액되어⁵⁾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2) ■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pm 0.1\%$ 범위내) 차이 있음

3)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3,500만원,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5,000만원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5) 지출계획 변경(1차, '25. 2.28) :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 △1,900만원,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재개장 5,000만원 포함

〈표 3-1〉 양성평등 가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당 초 (A)	1 변 차 경	기 금 운 용 계 변 경 안 (B)	증 감 (C = B - A)	증 감 률 (D = C / A)
지 출 합 계		2,088,024	2,088,024	3,949,226	1,861,202	89.1
성 평 등 증 진	여성 권익 증진 사업 (양성평등가족기금)	1,117,000	1,148,000	1,233,000	116,000	10.4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 모 사 업	677,000	658,000	658,000	△19,000	△2.8
	양 성 평 등 주 간 사 기 념 행 사	60,000	60,000	60,000	-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을 위한 단체 지원	100,000	100,000	100,000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50,000	50,000	50,000	-	-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심 지킴이 운영	50,000	50,000	50,000	-	-
	양 육 행 복 도 시 가 성 과 평 가	100,000	100,000	100,000	-	-
	아 이 사 랑 홈 인 증 사 업	80,000	80,000	80,000	-	-
	일 본 군 위 안 부 '기억의 터' 재개장	-	50,000	50,000	50,000	-
	피 해 자 안 심 응 원 프 로 그 램 운 영	-	-	35,000	35,000	-
	2025년 서울 시 성 평 등 임 금 공 시 추진	-	-	50,000	50,000	-
재 무 활 동		958,024	927,024	2,703,226	1,745,202	182.2
	보 전 지 출 (양성평등가족기금)	958,024	927,024	2,703,226	1,745,202	182.2
	여 유 자 금 예 치	958,024	927,024	2,703,226	1,745,202	182.2
행 정 운 영 경 비 (양성평등가족기금)		13,000	13,000	13,000	-	-

※ 자료근거 : ①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양성평등가족기금 지출계획
②양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5. 5.26) 재구성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과 신규 편성한 **기타수입**을 '25년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적립)하며 다른 정책사업중 세부사업의 지출계획을 증·감하고자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⁶⁾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⁷⁾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⁸⁾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하되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사업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9억 2,900만원)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16억 7,800만원)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포함)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법률지

6)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2. 제45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략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8) 행정안전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281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의 적립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원, 이주비지원 등 원스톱 지원하는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음에도9),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금으로 신규 지출계획하는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원) 또한 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률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기금에 보조금을 편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10)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기금운용 계획을 제출하여 절차적 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나11)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도 동 기금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성 해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적정’ 결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지출 계획중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3,50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로,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은 구분되어야 함에도 동 조례에는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기금으로 지출하는 사업을 정하면서 기금의 용도중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12)

9) ■ 여성가족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p. 240~250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서, p. 226

10) 행정안전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330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

○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참조)

11)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6321 (’25. 5.15)

- 기금으로 지출하려는 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구분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¹³⁾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금의 재원이 지출계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¹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때 기금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사업별 설명서를 누락한다면 사

12)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2. 제45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업에 대한 신설,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의결을 요청하는 행태인 것은 물론 지출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변경된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최민규(도시안전건설)

- 부위원장 : 김경훈(교육), 정준호(교통)

- 위 원 : 서호연(행정자치), 홍국표(기획경제)

이용균(환경수자원), 아이수루(문화체육관광)

도문열(보건복지), 봉양순(도시안전건설)

김종길(주택공간), 김원태(도시계획균형)

※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5. 6.26(목) 12:00~1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6.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50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수입계획 변경

-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을 기금 수입으로 신규 편성(증 1,810백만원)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증액(증 51백만원)하고자 함

※ 양성평등 가족 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5년부터 매년 다둥이 행복카드 연단위 적립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 예정

나.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

- 변경된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을 증액(1,745백만원)하고,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35백만원,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 공시 추진 5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구분(항·목)	'25년(A) 당초 계획	'25년(B) 1차 변경	'25년(C) 2차 변경	증 감 (C-A)	(C-A)*100/A
합 계	2,088,024	2,088,024	3,949,226	1,861,202	89.1
216 이자수입	13,555	13,555	13,555	-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3,306	13,306	13,306	-	-
216-03 기타이자수입	249	249	249	-	-
223 보조금반환수입	30,259	30,259	30,259	-	-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0,259	30,259	30,259	-	-
224 기타수입	-	-	1,809,788	1,809,788	
224-07 그외수입	-	-	1,809,788	1,809,788	
714 예치금 회수	976,770	976,770	1,028,184	51,414	5.3
714-01 예치금회수	976,770	976,770	1,028,184	51,414	5.3
721 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	-
722 예탁금및예수금	967,440	967,440	967,440	-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967,440	967,440	967,440	-	-

○ 지출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정책·단위·세부사업)		'25년(A) 당초 계획	'25년(B) 1차 변경	'25년(C) 2차 변경	증 감 (C-A)	(C-A)*100/A
합 계		2,088,024	2,088,024	3,949,226	1,861,202	89.1
성평등 증진		1,117,000	1,148,000	1,233,000	116,000	10.4
여성 권익증진 사업 (양성평등 가족 기금)		1,117,000	1,148,000	1,233,000	116,000	10.4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		677,000	658,000	658,000	△19,000	△2.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0,000	60,000	60,000	-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100,000	100,000	100,000	-	-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50,000	50,000	50,000	-	-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심 지킴이 운영		50,000	50,000	50,000	-	-
양육행복도시 성과평가		100,000	100,000	100,000	-	-
아이사랑홈 인증 사업		80,000	80,000	80,000	-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재개장		-	50,000	50,000	50,000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	-	35,000	35,000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	-	50,000	50,000	
일반예산(재무활동)		958,024	927,024	2,703,226	1,745,202	182.2
보전지출(양성평등 가족 기금)		958,024	927,024	2,703,226	1,745,202	182.2
여유자금예치		958,024	927,024	2,703,226	1,745,202	182.2
행정운영경비 (양성평등 가족 기금)		13,000	13,000	13,000	-	-
기본경비(양성평등 가족 기금)		13,000	13,000	13,000	-	-
기금관리비		13,000	13,000	13,000	-	-

※ 지출계획변경(1차): 정책사업(성평등 증진) 내 2025년 공모사업비(△19백만원) 및 재무활동 내 예치금(△31백만원) 감액하고,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재개장> 사업 신규 편성(50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박선우 (☎ 2133-5326)